

1. 개정이유

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 애로에 따라 2MW급 전력변환장치 설비 도입 및 구축이 지연되어 KC인증 용량확대 시행시기 변경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2MW급 시험설비 구축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KC인증 시행시기 연장*

* 시행규칙 부칙: (기존) '21.12.1. 이후 적용 → (개정) '22.12.1. 이후 적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“2021년 12월 1일”을 “2022년 12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부 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1호, 2019.10.21.> 제3조(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3항 단서, 별표 1 제1호타목1)·3) 및 별표 4 제1호타목1)·2)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정격용량이 100kW 초과 1MW 이하인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3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하고, 정격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<u>2021년 12월 1일</u>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.	부 칙 제3조(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3항 단서, 별표 1 제1호타목1)·3) 및 별표 4 제1호타목1)·2)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정격용량이 100kW 초과 1MW 이하인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3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하고, 정격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<u>2022년 12월 1일</u>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.